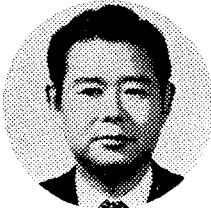


審判과 裁判關係

— 工業所有權紛爭에 있어 —



李炳均

〈特許廳 抗告審判官〉

① 特許爭訟의 類型

本稿는 特許法(以下 工業所有權四法을 代表 또는 包含하여 指稱하는 것임)上의 紛爭과 그 解決節次로서의 各種訴訟의 進行와 關聯하여 派生될 수 있는 몇가지 問題點, 特히 權利의 實體的 判斷을 主로 하는 審判과 그 權利의 侵害을 救濟코자 하는 民事的, 刑事的 節次로서의 裁判과의 關係에서 發生될 수 있는 問題點들을 檢討해 보고 그合理的代案을 摸索해 보는 機會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特許爭訟이라고 함은 廣義로 特許法이 规定하는 모든 類型의 紛爭과 그 處理節次를 總稱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即 特許法에 规定된 審查節次, 그 登錄이나 拒絕에 對한 不服·救濟手段 即 特許權의 登錄無效審判 또는 拒絕審定不服抗告審判, 權利範圍確認審判, 取消審判, 그리고 權利侵害에 對한 救濟手段으로서의 民事上의 各種請求와 刑事上의 處罰等을 包含한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意味의 特許爭訟의 類型을 몇 가지 基準에 따라 分類하여 보면

첫째, 그 管轄하는 機關을 標準으로 하여

- ① 法院이 管轄하는 裁判: 刑事訴訟 民事訴訟
- ② 特許廳이 管轄하는 審判: 無效, 取消等

둘째, 그 審級에 따라

① 法院의 審判

- 第1審 地方法院
- 第2審 高等法院
- 最終審 大法院

② 特許廳의 審判

- 第1審 審判所
- 第2審 抗告審判所
- 最終審 大法院

세째, 그 請求 또는 爭訟의 內容에 따라

1) 刑事訴訟

- ① 特許權侵害罪
- ② 偽證罪
- ③ 詐偽行爲 및 虛偽表示의 罪
- ④ 秘密漏泄罪

2) 民事訴訟

- ① 侵害禁止 또는 豫防의 請求
- ② 損害賠償請求
- ③ 信用回復請求
- ④ 補償金額 또는 對價에 對한 不服의 訴

3) 特許審判

- ① 登錄無效審判
- ② 權利範圍確認審判
- ③ 通常實施權許與審判
- ④ 訂正許可審判
- ⑤ 取消審判(商標)

◎ 工業所有權紛爭小考.....

② 特許審判의 特徵

審判이란 무엇이며一般的行政處分과는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審判”을一旦特許審判에限定하는 意味(抗告審判까지 包含하는 意味로使用되는 경우가 많음을 諒解하기 바람)로 보고 그 特質을 몇가지 들어 보고자 한다. 審判의 性質에 關하여도 여러가지 見解가 있는가 하면 國家에 따라서 特許審判制度도 여러가지 形態가 있어 이것을 詳論할 수는 없고 筆者は 다만 우리의 實定法이 規定하는 審判制度의 內容을 그 具體的 規定에 依하여 몇가지 特징으로 指摘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審判이란 用語는 반드시 特許法에 局限使用되는 것은 아니며 司法機關의 行爲에도 또는 海難審判, 國稅審判等 行政機關의 行爲에도 使用되고 있다. 그래데 行政機關인 特許廳에서 審理·判斷하는 行爲로서의 “審判”은一般的行政處分과는 달리 그 機關의 職務上의 獨立性이 認定되고 또 그 擔當職員에 對한 資格要件을 必要로 하며 그 業務의 處理節次가 좀더 慎重하여 마치 司法의 訴訟과 類似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 여기서 特許審判이란 어떤가를 살펴보자.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그 節次의 訴訟法의 性格이다. 여기서 訴訟法의 性格이란 訴訟法 特히 民事訴訟法의 訴訟節次와 비슷하다는 뜻이다.一般的으로 行政機關의 行政節次는 訴訟法의 그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詳論할 必要조차 없다.

그리하여 特許法의 審判節次에서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하는 規定(法25條의 代理人, 第113條 口頭審理에서의 調書作成, 第114條 通譯, 第103條 即時抗告, 第116條 證據調查와 證據保全, 第136條 및 第139條의 再審, 第149條 費用負擔, 第144條의 上告節次等)이 있는가 하면 그 것과同一 또는 類似한 內容을 表現만 다르게 한 많은 規定이 있고 또 特許法自體에서 特許權의 그 技術性이나 公益性을 考慮한 別途의 規定(第97條 2項 特許權의 利害當者가 아닌 審查官의 審判請求權, 第106條 審判의 必要的 合意體, 第

119條 職權審理의 原則)을 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司法的 訴訟節次와 같이 3審制를 두어 第1審(審判所), 第2審(抗告審判所)을 거쳐 最終審으로 大法院에 의하여 判決確定케 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特許法의 審判節次規定은 民事訴訟法에 對한 特別法의 地位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特징은 그 職務의 獨立性과 審判官의 資格要件이다.一般的行政機關(여기서는 行政官廳을 意味한다) 行爲는 當該機關의 長의 責任과 權限으로, 그 名義로 對外의 으로 表示되고 執行되며 따라서 當該機關長의 監督下에 있는 補助機關은 當然히 그 長을 補佐하는 機能에 限定되고 그 指示와 命令을 받으며 對外의 으로는 그 機關의 長의 責任으로 되는 것이다(政府組織法 第6條). 그런데 特許審判의 경우는 “審判官 및 抗告審判官은 職務上 獨立하여 審判한다.”(第101條 3節)고 規定하므로 行政機關에 있어서의 上下級關係의一般的 指揮·監督權(政府組織法 第6條)을 排除하고 있다.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는 規定(憲法 第104條)이 法官의 職務上의 獨立性 特히 内·外部로부터의 壓力이나 干涉을排斥하는 司法權獨立의 象徵的 根據로서 例示되듯이 特許審判도 最終的으로는 大法院의 司法的 判斷을 받는 節次이므로 이같은 職務上 獨立性의 保障은 必須的 要請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職務上 獨立性를 法律로서 規定하고 있는 審判行爲(訴訟의 行爲)에 關하여 그 合法性과 妥當性 與否는 最終的으로 大法院에 依하여 判決로서 가려질 것이며, 다른 어떠한 機關도 이를 曰可曰否하거나 干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趣旨에 따라 合意體審判(第106條), 審查·審判關係書類의 搬出禁止, 審查·審判의 內容에 對한 應答禁止(第39條)의 規定이 設置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特許審判을 擔當하는 審判官 또는 抗告審判官은 一般公務員中에서도 特定한 資格(法 101條 및 令 11條)을 가진 者에 限定케 하므로써 審判의 特殊性(技術性 또는 專門性)에 對處케 하고 있다. 以上 舉示한 審判의 두가지 特징은 主로 審判節次의 特

殊性에基因한 것이며, 그것은 民事訴訟의 그것과 비슷하다는點에 있고 3審制에依해서 그當否가 判斷된다는觀點에서 보아 이를 司法行爲의 하나라고 보는 見解(司法行爲說)가 있는가하면, 그와는 달리 이 審判이 行政機關에依하여 行하여지고 그 職務의 獨立性과 擔當公務員의 資格要件이 있다고는 하나 法院의 그것과는比較도 안될 縣隔한 差異가 있다는點에서 보아이는 어디까지나 行政處分이라고 보는 見解(行政行爲說)도 있으나 筆者の 見解로는 이같은 審判을一般的行政處分과同一視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純粹한 司法機關의 裁判과 같은 司法行爲로 볼 수도 없으므로 準司法의 行爲라고 보는立場(準司法行爲說)에共感하고 싶다.

다음 세번째로 들 수 있는 審判의 특징은 그客體의特殊性(公益性과 技術性)이다. 먼저 그公益性에關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特許審判의客體는特許權이라고 할 것인데, 審判은 그節次에 있어서 大體的으로民事訴訟과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別途의 規定을 둔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客體가 되는特許權도民法上の財產權인物權(所有權이나其他의制限物權)과類似한私權이기는 하나 거기에 公益의要素가包含되어 있음을看過할 수 없다. 그것은特許權이 그權利者(發明者 또는 그權利의讓受者)保護만을意圖하는것이 아니고國家產業의發展에寄與하게함을目的으로하는것이기때문이다(法第1條). 따라서 特許權은民法上의所有權과는 달리 公報에公告해야 하며(法83條) 그權利의存續期間이有限하고(12年乃至8年) 또한 그權利의行使·不行使를權利者の自意에一任하는것이 아니라國家가一定한制限을加하고 있다(權利의實施를强制하고一定한不實施에對하여는 그權利를他人에게使用시키거나剝奪하며, 또한權利의濫用을禁止하고濫用에對하여一定한制裁를加한다. 法第50~53條, 74條). 그리고 또한 이러한公益性의要請으로 말미암아 그權利의效力를나를수있는當事者は 반드시 利害關係者에局限하지 않고事件의性質에따라서는公益의代辦者라고 볼수있는國家(具體적으로는審查官)도 될 수

있으며(法第97條, 이점에 있어서檢事が刑事訴追權을 갖는 刑事訴訟과도類似한點이 있다.) 審判의進行에 있어서도原則적으로職權探知主義가採擇되고 있다(法第19條).客體의 두번째특성인 技術性에關하여는 다음節에서 살피기로 한다.

③特許裁判에서의 “侵害問題”

여기서便宜上特許裁判이란特許法에規定된爭訟으로서法院의管轄이되는民·刑事裁判을略稱하는것으로보고特許審判이란敘上한바와같은特許廳의所管인審判을뜻하는것으로보기로하자. 그러면特許權侵害에基한民事的請求權또는刑事的處罰은特許法에規定되어있으며그러한意味에서特許法은民法또는刑法에對한特別法的地位를가지게된다. 우선民事的請求權의種類를보면①侵害의禁止또는豫防請求權(法155條)②侵害로因한損害賠償請求權(法156條)③信用回復請求權(法第157條)④補償金額또는對價의決定에對한不服의訴(法152條)等이있는바, 이러한民事的請求權은其性質로보아서私權의保護를目的으로하는民事的請求權으로서特許法에規定이없다하더라도어느程度까지는民法의規定에依하여當然히保護될수있는것이라고할것이나特許法에特別히이를規定한것은그客體가되는特許權의特殊性(그技術性또는公益性)을堪案하여保護의程度를두텁게,確實하게하자는데目的이있는것으로보인다. 다음에刑事的處罰規定을보면①侵害의罪(法158條)②偽證罪(法159條)③詐偽行爲및虛偽表示의罪(法160條)④秘密漏泄罪(法161條)等이있는바, 이러한罪도刑法으로서어느degree까지는다스릴수있는것이나前述한바와같은特許權의特殊性에비추어이를무겁게處罰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民事的請求또는刑事的處罰에있어서도가장問題가된다는것은侵害의concept이다. 即民·刑事的請求나處罰의要件또는前提가되는“權利의侵害”란그리明白하지도않으며더구

◎ 工業所有權紛爭小考.....

나 그成立與否가 다른 모든 判斷의 基礎가 되기 때문에 더욱 慎重하지 않으면 안된다. 열른 생각하면 “特許權侵害”란 “特許登録된 他人의 特許權을 그대로 實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勿論 “他人의 登錄된 權利를 그것과 똑같이 實施하는 경우”는 侵害가 되는데에 疑問이 없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實施(實施의 概念도 正確하게 規定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게” 實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程度까지 비슷하면 侵害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그 技術判斷에 있어서의 特殊性이 있고 바로 이러한 技術的 判斷의 領域 때문에 「特許審判」이라고 하는 特別한 爭訟節次를 마련한 制度의 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侵害與否를 判斷하기 為해서는 먼저 特許權의 “權利範圍”를 把握하여야 한다. 權利範圍는 그 特許發明의 技術的範圍가一致하고 그 技術的範圍는 出願書에添附된 明細書의 特許請求의範圍의記載에 依해서決定된다. 다음에는 侵害한 即加害者의 物件 또는 方法(이를 便宜上 (가)號 權利라고稱함)의 그 技術的範圍를 明確히 하고 마지막으로 兩者를 對比하여 그 技術의 構成要件이나 作用效果等에 있어完全히 同一하거나 또는 그 要部가同一하다고 認定되는가 아닌가에 依하여 判斷한다. 이것을 學問上同一性判斷이라고 하는 바, 여기에도 그發明의 技術의構成部分을 각각 分解對比判斷하여야 한다는 構成要件說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그發明의 中心되는 本質的 部分에 있어서의 技術의 作用效果등을 比較判斷하여야 한다고 하는 要部說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判斷의 細部의 基準을 만들어 運用을 하기도 하지만, 具體的 事案을 審判하는데는 바로 들어맞기는 어려우므로 決局은 審判官의 專門的, 技術的, 良心的 判斷에 依하여 그 마지막 限界가 設定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過程이야말로 法院의 管轄인 特許裁判에서는 判斷되기 어려운 「特許審判」의 領域이라 할 것이다, 이 特許審判도 第1審인 審判, 第2審인 抗告審判을 거쳐 最終審判인 大法院判決로서確定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機會에 덧붙혀 言及하고 싶은 것은 아무

리 特許가 엉터리로 登錄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또는 아무리 他人이 내 特許權을 侵害하고 있음이明白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은自己의一方的確信일 뿐이며 그것이客觀的으로確認되기為해서는 이와같은專門的技術的判斷에 依하여訴訟的節次(第1審, 第2審, 第3審)에 따라最終的으로는 大法院의 判決에 依하여서만 處理確定되는 것이지 決코 上級者의指示·命令이나 또는 監督官廳의 監督權으로 處理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事實을理解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혼히 建議書, 陳情書, 嘆願書, 投書等의 形式으로 第3의機關에 呼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陳情을 받은 監督機關이나 上級官廳에서도 呼訴한內容을 調查確認해 본結果, 그와는 正反對의 主張과呼訴가復雜하고 날카롭게對立되고 있고 그 어느쪽의 正否를 쉽게 判斷하기도 어렵게되어, 決局은 訴訟的節次에 따라 解決하도록 移譯할 수밖에 없었던 事例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④ 特許裁判과 特許審判의 矛盾과 調和

特許權의 侵害를 理由로 法院에 特許裁判을請求하는 경우에는 ① 侵害禁止 및 損害賠償의請求 ② 侵害罪의處罰을 要求하는 刑事告發을 할 것이다며, 同時に 特許廳에 特許審判을請求하면서被告의 製品 또는 方法이自己의 特許權의範圍에 屬한다는 權利範圍確認審判을求할 것이다. 그린가하면被告은 法院에對하여는 權利侵害가 아니라고 主張할 것이며 特許廳에對하여는 民事上의 一種의反訴와 비슷한 消極的權利範圍確認審判(自己의 物件이나·方法이原告의 特許權의範圍에 屬하지 아니한다는主張)이나 또는 特許登録無效審判(原告의 特許權은登録될 수 없는것이므로 그登録은無효라고하는主張을請求할 것이다). 이와같이同一客體에對한여러가지 樣態의特許關係爭訟이 同時に提起되는 경우에微妙한問題가惹起될 수 있다. 첫째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民事法院에 있어서原告(甲)의請求를理由로하여被告(乙)는原告의 權利를侵害했음이明白하므로

그 侵害를 中止하고 또 그로 因한 損害額을 賠償하라는 判決이 나오고, 刑事法院에서는 被告는 告訴人の 權利를 侵害한 事實이 없다 하여 無罪를宣告하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로 法院에서는 被告가原告의 權利를 侵害한 事實을 認定하여 ① 被告는原告에게 그 損害額을 賠償하라(民事法院) ② 被告에게懲役 6月을 宣告한다(刑事法院)하고, 特許廳의 權利範圍確認審判에서는 被告의 (가)호 權利(審判에서는 便宜上 被告의 實施內容을 (가)호 權利라고 하고 있음)는原告의 特許權의 權利範圍에 屬하지 아니한다. 即 兩者는 서로 다르다는 審決, 다시 말하면 法院과 特許廳이 서로相反되는 判斷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最惡의 경우 이러한 判決이나 審決이 어느 過程에서確定되어 버린다면……? 이와같이同一原因,同一證據에基한同一事件에 있어서 그請求의種類와 그管轄機關의相異에 따라相互矛盾되는判斷이 國家意思로서成立된다면 이것은 큰問題가 아닐 수 없다.勿論 이러한矛盾은 大法院에依하여 또는 再審에依하여窮極의으로는 解決되는 길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矛盾을 事前에豫防하고 調和시키어 國家意思即司法的判斷의 國民的信賴를增進시키기爲한 方案으로서 ①立法的解決이 있을 수 있고 ②法運營上의解決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法運營上의 解決方案에 關하여만 論及하고자 한다. 이點에 關하여 特許法 第148條는 다음과 같이規定하고 있다(審判繫屬中の訴訟節次의 中止). ① 審判 또는 抗告審判에 있어서必要한 때에는 他審判이나 他抗告審判의 審決이確定 또는 訴訟節次가完決될 때까지 그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② 訴訟節次에 있어서必要하다고認定될 때에는 法院은 特許에 關한 審決의確定이 있을 때까지 그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여기서 第1項은 特許廳이 特許審判을 함에 있어서 ① 特許審判內部에 있어서의同一한(또는類似한)事件에對한相互矛盾되는判斷(審決)을防止하고 法令解釋 또는 事實判斷의基準을統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②同一 또는類似한事件이 法院의裁判과 特許廳의審判에繫留되고 있는 경우에 그技術的判斷보다는節次的,法律的解釋과適用이問題가된다고하면, 이러한分野의專門家인法院의判決을기다려 그結果를審判에援用하므로서判決과審判의矛盾을豫防하고法令解釋의統一을期할수있게하고자하는것으로서至極히當然하고必要한일이며여기서는그說明을省略하고자한다. 第2項이바로本稿에서強調하여指摘하고있는 그것이다.

이規定에依하여法院은同一한事件에對한特許廳의審決이確定될때까지그裁判을中止하고그審決의result를裁判에援用할수가있다.勿論이것은訓示規定이며法院은審判의繫留如何에不拘하고獨自의判斷에依하여그訴訟節次를完決할수가있고, 또內容如何에따라서는訴訟의迅速한進行을爲하여서도그것이所望스러운경우가있다. 그러나위에서指摘한바와같은경우, 특히그技術的判斷이어렵고또判決과審決間의矛盾이나衝突을避하고法令解釋과適用의統一을期하여國民의信賴를增進시키기爲해서는이와같이一方이他方의result를기다리는것이所望스러운때가있는것이다. 이와같이法院의裁判과特許廳의審判이二元的으로兩立되어있는것같으면서도裁判과審判에있어서의技術的어려움과法律的難題들을相互補完의으로解決하는協力關係를維持하여兩者間에는對立이나矛盾이아니라協力과調和의結實을얻을수있는것이라고생각된다.(끝)

준법에는 예외 없다 너도질서 나도질서